



성년자 개명 절차 안내서

1. 기본 정보

- 거주 중인 카운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본 안내서가 아닌 JDF 385 의 개명 설명서를 사용하십시오.
- 제출 전 90 일 이내에 이루어진 지문 기반 범죄 경력 조회 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일부 카운티에서는 명령이 있기 전에 심리를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연락하여 절차와 심리 일정을 지정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십시오.
- 법원이 면제해 주지 않는 한, 명령이 있기 전에 개명 사실을 신청인이 공고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정하는 법령은 C.R.S. §§ 13-15-101, 102 입니다.

참고: 혼인 또는 시민결합 후 성(姓)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에 인증서의 인증된 등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

- | | | |
|----|------------------------|-------|
| 2. | <u>단계별 안내</u> | 2 페이지 |
| 3. | <u>상용 용어</u> | 4 페이지 |
| 4. | <u>제출 수수료</u> | 5 페이지 |
| 5. | <u>서식 목록</u> | 5 페이지 |
| 6. | <u>미국 장애인법(ADA) 정보</u> | 5 페이지 |
| 7. | <u>법률 자문</u> | 5 페이지 |

2. 단계별 안내

용어는 [4 페이지](#)에서 정의.

1 단계 - 지문 채취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지문 채취를 예약하십시오.

www.coloradofingerprinting.com

2 단계 - 범죄 경력 조회

다음의 기관에서 지문 기반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십시오.

[Colorado 주 수사국\(CBI\)](#) 및

[연방 수사국\(FBI\)](#).

주의:

- 1) 조회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90 일 내에 신청사건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2) 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범죄 처분에 대해서는 인증된 등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단계 - 신청사건 개시

- 1) 신청사건 개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JDF 433 - 신청서.

첨부: 범죄 경력 조회서 및 일체의 범죄 처분서.

참고: 공고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JDF 427 - 공고.

JDF 426 - 공고 명령. ([사건 표제부](#)만 작성하십시오.)

JDF 448 - 최종 명령서. ([사건 표제부](#)만 작성하십시오.)

- 2) 거주 중인 카운티의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3) 제출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수수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공고 면제

신청서를 통해, 법원에 **공고**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아동 **학대** 또는 가정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 신청인이 **성 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청서의 9 번 질문에 언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C.R.S. § 13-15-102(2), (4).

4 단계 - 심리(일부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지만 일부 법원은 열 수도 있습니다.

심리가 열리는 경우:

- 1) 해당 법원이 심리기일의 일시를 통지합니다.
- 2) 법정을 찾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찍 도착하십시오.
- 3)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공고를 명령(또는 면제)하게 됩니다.

5 단계 - 공고

법원이 면제해 주지 않는 한, 신청인은 자신이 원하는 개명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 1) 기록 신문에 21 일 이내에 최소 3 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2) 해당 신문사에 JDF 426(공고 명령서)의 법원 서명본을 제공하십시오.
- 3) 공고가 완료되면, 신문사가 공고 관련 서면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는, 증거용으로 각 공고문을 등사하십시오.

공고에 관한 증거를 신청인의 사건용으로 제출하십시오.

6 단계 - 최종 명령

공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또는 법원이 공고를 면제해 준 경우:

- 1) 법원은 서명된 명령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할 것입니다.
- 2)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증된 등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기업 또는 정부 기관이 자신의 기록물에 신청인의 개명 사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본 또는 인증된 등본을 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십시오.

예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차량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송부.

소유한 재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카운티 서기 및 등기관에 송부.
여권 재발급을 위해 미연방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 송부.

개인신용평가기관에 송부. 기타 기관에 송부.

3. 상용 용어

사건 표제부

서식 상단에 있는 상자입니다. 이에는 법원의 주소, 당사자의 이름, 제출자의 연락처, 사건번호가 담겨 있습니다.

신청서

개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공고

개명 사실은 명령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본 신청 사건이 제출된 카운티의 법률 신문에 최소 3 회 이상 공고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법적 용어로는, "~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 또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야 한다

법적 용어로는 "~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4. 수수료

제출 수수료	\$98 - 카운티 법원(가장 보편적임) \$268 - 지방법원(절차는 동일하지만, 비용이 더 높음)
인증된 등본	\$20

수수료 면제 요청을 위한 절차

다음의 서식을 제출하십시오.

- JDF 205 - 수수료 면제 신청서.
- JDF 206 - 명령서. (사건 표제부만 작성하십시오.)

또는 신청인이 소정의 공공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음의 서식을 제출하십시오.

- JDF 209 - 수수료 면제 통지서.

또한 신청인은 지문 채취, 범죄 경력 조회(CBI/FBI)와 개명 공고(신문사)를 위해서도 관련 기관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5. 모든 서식 (번호 순)

- JDF 426 - 공고 명령서.
- JDF 427 - 공고.
- JDF 433 - 신청서.
- JDF 448 - 최종 명령서.

6. ADA 정보

미국 장애인법에 의거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법원의 ADA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7. 법률 자문

본 내용은 정보 안내만을 위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안내서입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변론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동일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기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